

VI. 主要 政策 解説

○ KDI, 金融 規制 緩和 건의(4. 28)

-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해외에서의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, 외화 자금 조달 신고 의무와 자본재 도입용 해외 증권 발행 한도 폐지
- 금융 기관의 경우 리스社의 중고 물건 리스 허용, 상호신용금고의 5년 이상 예·적금 취급 허용, 투금사의 어음 발행 한도 폐지 등

○ 재정경제원, 企業 經營 透明性 提高 및 少額 株主權 強化 방안 검토(4. 28)

-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, 민간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경우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 부여
- 기업체 이사 선임에 누적 대표제를 도입하여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

○ 재정경제원, 金融 機關 合併 支援 강화(4. 30)

- 금융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매수·합병에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확대
- 중시 침체로 미루어 온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증자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

○ 정부, 金融 機關 新規 參與 制限 완화(5. 2)

- 은행, 증권, 투신, 보험업 등에 대한 대기업 그룹의 신규 참여 제한 완화
- 신용카드, 리스, 할부금융회사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만 갖출 경우 설립 자유화
- 창업투자와 투자자문사의 등록 제한도 대폭 완화

○ 건설교통부, 2001년까지 産業 團地 4,200만 평 개발(5. 3)

- 호남 지역의 1,330만 평을 비롯 전국적으로 4,200만 평의 공업 단지 개발 보급
-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수원·경기 지역을 개발하여 서울 지역의 공장 이전 유도

○ 국가경쟁력기획단, 經濟 法令의 不合理한 規制 條項 중 3,300件을 폐지(5. 7)

- i) 법률적 근거없이 고시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서 규제하는 경우, ii) 표현이 애매한 경우, iii)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
- 96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 증권 발행 자격 제한 등 600건, 97년 상반기까지 경제 부처의 인·허가 신고등 2,700건의 규제 조항에 대한 규제 완화